

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직제 및 직무규정에 의하여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,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위원회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위원회라 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직제 및 직무규정에서 정하는 직제 외에 연구, 자문 및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.

제4조 (설치 및 규정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사유, 기능,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관계부서의 장은 본교 제규정관리규정에 의거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제정 절차를 밟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그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

제5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 (승인)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시행)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10조 (위원회의 해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해체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위원회가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.

제11조 (주무부서 또는 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부서를 정하거나

간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운영규정이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운영규정을 작성하여 2006년 말까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